

	교직원 해외연수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00. 10. 16.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국제간 학술교류를 통하여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종류 및 기간) 교직원의 해외연수 종류 및 기간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단기 : 6개월 이내
2. 중기 : 6개월 이상 1년 이내
3. 장기 : 2년 이상
4. 단체연수 : 1개월 이내

제3조(연수기관)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의 저명대학, 산업체 또는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관계 협정교로 한다.

제4조(연수기간 중의 신분 및 급여) 신분은 "연수근무"로 처리하며,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연수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내는 보수의 전액지급 (학생 지도비 제외)
2. 해외연수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이내는 보수의 50% 지급 (학생 지도비 제외)
3. 연수기간이 2년 이상은 휴직(무보수), 3년 이내는 휴직처리하며 무보수
4. 3년 이상은 면직 처리한다.

제5조(인원선정) 인원선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단기 · 중 · 장기 연수
 - (1) 교비연수는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연수 경력의 없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 (2)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외국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 받는 자, 교환교수로 선정된 자는 (1)항에 의해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다.
 - (3) 자비연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1), (2), (3)조항 공히, 소속 학과에서 해외연수 교수가 중복이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단체연수
 - (1) 연수대상은 대학 교직원과 학생으로 한다.
 - (2) 연수 참가 대상자는 연수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근속자로 하며, 부임순서로 순환한다.
 - (3) 연수 참가 대상자 중 최초 5년 초과 근속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 (4) 학술발표 당사자와 전공별 교류자 및 공무집행자는 근속 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참가할 수 있으며, 연수순환에서 제외한다.

제6조(선발시기) 제5조 1.항의 (1)목은 심사 후 매년 7월에 결정하며, 1.항의 (2)목과 2항은 사안이 발생할 때 결정한다.

제7조(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각 항별로 해당서류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1. 제5조 1항의 희망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재직증명서 1통
 - (2) 연구실적 목록 1부(최근 4년 이내)
 - (3)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게재 학술지 목차와 별쇄본 각 1부, 저서 각 1권
 - (4) 연구계획서 1부 소정양식 사용<서식 1-1~1-3>
2. 제5조 2항의 희망자는 해당국의 연구비 지급확인서, <서식 1-3>, <2-1~2-3>, <서식 3>, <서식 4>

제8조(선발방법) 제5조 1항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점수 산정으로 고 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1. 재직 년수 : 10-13년 : 10점, 14-17 : 11.5점, 17년 이상 : 13점
2. 학위 : 박사소지자 : 5점, 박사수료자 : 4점, 석사소지자 : 3점
3. 연구실적
 - (1) 논문 및 저서의 환산율은 1인 1.0, 2인 0.7, 3인 0.5, 4인 이상 0.3으로 한다.
(저서의 경우는 문제집은 제외)
 - (2) 국제학술지 및 학회지(ISI등록) : 5점, 전국규모 학술지 및 학회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일람표) : 3점, 이 외의 게재지 : 1점
4. 산정방법 : 1항+2항+3항×2로 한다.

제9조(연수기간 경비) 제5조 1항의 경우에 한하여 교비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기관 선정 및 연수기관에서의 신분)

1. 연구기관 선정은 연수 희망국 대학 총장, 학과장 및 산업체장, 연구소장 등 책임 있는 자가 발행하는 초청장을 제출하여, 연구기관 선정의 적합성을 국제교육학술교류연구소장 (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제청하여 총장이 결정 한다.
2. 연수연구기관에서의 신분은 연구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출국시기) 선발된 자는 1년 이내에 출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출국경비 신청) 출국일 50일 전까지 소정약식에 의거 신청한다.

제13조(지급경비 횟수 및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 한 한다.

1. 정해진 연구기간 중 조기귀국 및 일시 귀국기간을 합하여 2주일을 초과한 자
2. 일시 귀국기간이 년 30일 초과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비지급 중지, 횟수 등의 조치와 향후 5년간 각종 연구비 지급을 중지한다.

제14조(일시귀국) 연수 연구기간 중 일시귀국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나 다만, 직계가족의 병고, 사망, 혼인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관련된 학술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체재지 도착보고) 현지 도착 후 15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

제16조(중간보고) 출국 6개월 후에 연구과제명, 당초 연구계획, 연구진행 상황, 향후 연구 계획 등 연구진행 상황을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

제17조(귀국보고)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첨부하

여 귀국보고서(소정양식)를 제출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논문발표 국가 : 연수한 국가 또는 귀국 이후 1년 이내에 국내에서 발표
2. 발표학술지 : 연구지원 신청서 명기한 학술지 및 동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3. 연구비 지원표시 : 국내에서 발표할 경우는 첫 장 여백에 "이 논문은 --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이라고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제19조(귀국 후 연구결과보고 미 제출)

1. 귀국 후 1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 미 제출자 : 연수기간 중의 연구비의 50%를 회수하며, 향후 5년간의 모든 연구비를 제한함.
2. 귀국 후 2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 미 제출자 : 연수기간 중의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며, 향후 7년간 모든 연구비를 제한함.

제20조(연수자 의무) 해외 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위와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아니한다.
2. 해외 연구기관의 규칙을 준수한다.
3. 연수국명,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4. 귀국한 후 연수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 봉직한다.
5. 위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여행기간 중 지급된 보수를 전액 반환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0월 16일 교무위원회 재규정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익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1〉

년도 교비 해외연수 연구지원 신청서

소	속	학과 :	직위 :	(한문) 성명 (한글)	사 진
주 민 등 록 번 호			세부전공		
주 소					
연 구 과 제 명	(국 · 한문)				
	(영문)				
연 수 희 망 국 가	국가명:				
	기관명:				
게 재 학 술 지 명					
본인은 별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해외 연수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며, 선발시는 우리대학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력 서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			
경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			
	~			
	~			
최근연구 실 적 (최근5년)	연 구 과 제 명		발 표 지	발표년·월·일
최근해외 연수경력	기 간	연 수 국	연수목적 및 과제	

〈서식 1-3〉

연 구 계 획 서

별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연구 활동

4. 연구 경과에 대한 기여도

5. 참고 문헌

6. 연구 처진 일절

해외연수 연구기관 동의요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연수국명	연구기관명

본인은 해외 연수 교수로 선정되어 연수 희망국의 초청장을 입수하였기에
연구기관 동의요청서를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초청장 사본(번역본 첨부) 1부

년 월 일

요 청 자 성명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2-3〉

서 약 서

소속:

직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교수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년도 해외 연수 대상교수로 선정된 자로서 출장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해외 출장 연구 및 연수 교수임을 명심하고 연구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외 생활 중 우리 나라의 역사,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소개하며 목포과학대학교인을 해외에 알리는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경비를 지정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성실히 진행하겠습니다.
4. 본인은 해제 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귀국하여 본 대학에 복귀하겠습니다.

이
유
이

서약인 성명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교비 해외 연수교수 체제지 도착 보고서

성 명 : (국문) _____ (영문) _____			
직 위 : _____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해외연수교수로서 승인된 국가의 연구기관에 아래와 같이 도착하고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대한민국 출발 년월일			
연구목적 도착 년월일			
도착국 체제지 주소		T E L	
연 구 기 관 명		T E L	
연 구 종 사 부 서			
공동 연구 주임 성명			
공동 연구 기관인 성명			
(본 보고서는 현지 도착 후 15일 이내에 본 대학에 도착해야 함).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

해 외 연 수 중 간 보 고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 과 제 명	(국문) :				
	(영문) :				
연구 기관 명					
건의사항					
연락처 :					

상기와 같이 해외 연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성명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1〉

교비 해외 연수 귀국보고서

년도

소 속		직 위		성 명	
연 구 국					
연구기관					
연수기간					

다음순서에 의하여 별지 작성

1. 연구내용(논문개요) 및 수행사
2. 연구결과 활용 계획
3. 연구학문분야의 국내학계 동향
4. 주요활동 내용
5. 연구비 사용 내역

가. 인건비 :	_____	원
나. 여 비 :	_____	원
다. 수용비 :	_____	원
라. 수수료 :	_____	원
마. 재료비 :	_____	원
바. 회의비 :	_____	원
사. 기 타 :	_____	원
총 계 :	_____	원

6. 건의사항